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10

발의연월일: 2022. 12. 6.

발 의 자:김희곤·강기윤·구자근

김형동 · 노용호 · 박대수

안병길 • 이명수 • 전봉민

정희용 · 최춘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 문·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들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과 인쇄물 배부 등 금지조항에 대해, 선거비용 규제나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방 법, 비용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 선거의 기회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동안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아울러, 현행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선 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일상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적 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의 불균 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고 판단하였음.

이와 함께 이들 법 조항에 대해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표시물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어깨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어깨띠"로, "표시물"을 "표시물(이하 "표시물"이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 가능한 표시물의 종류, 크기, 수량, 사용 방법 등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80일"을 "90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0日"을 "9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생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 비용으로 제작한 어깨띠-----트·소품, 그 밖의 <u>표시물</u>을 사 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단 신설> ----표시물(이하 "표시물"이라 고 한다)----------. 이 경우 사용 가 능한 표시물의 종류, 크기, 수량, 사용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 -----90일-----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1. ~ 3. (생략)
- ② (생략)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 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 또는 당補者(候補者가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
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u>90일</u>

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圖畵, 印刷物이나 錄音·錄畵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③ (생 략)

·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